

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

제6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이 장에 적용된다.

제6.2조 목적

이 장의 목적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, 투명성을 강화하며, 규제 협력과 모범규제관행의 확대를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.

제6.3조 적용범위

1.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,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.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.
 - 가. 제11장(정부조달)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, 또는
 - 나. 제5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

제6.4조

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

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
제6.5조

국제 표준

1.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.4조 및 제5.4조에 규정된 범위에서,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,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.
2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,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에 국제 표준,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, 각 당사국은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「협정 제2조,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,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」과 그 후속분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.
3.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, 그들의 그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,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국가 표준화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.

제6.6조

기술규정

1.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

부적절하지 않은 한, 양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다.

2.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,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.

제6.7조

적합성 평가절차

1. 양 당사국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.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국제적인 다자 간 인정 협정 및 약정의 인정
- 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,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증진
- 다.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장려
- 라. 적절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
- 마. 인정 절차를 포함한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기준의 조화, 또는
- 바.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메커니즘

2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,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가 수용되도록 보장한다.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.
3. 적합성 평가결과의 일관된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.
4. 각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5.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.
6. 당사국은 국가 및 지역 적합성 평가절차에 포함된 중복 시험 및 인증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, 그 부파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.

제6.8조

협력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.
 - 가.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대
 - 나. 건강, 안전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

- 다.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을 통한 무역 촉진, 그리고
 - 라.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, 적절한 경우 협력 강화
2.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하여 협력한다.
- 가.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모범규제관행의 증진
 - 나. 각 당사국의 기술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
 - 다. 건강,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, 그리고
 - 라. 적절한 경우 시장 감시 정보의 교환
3. 양 당사국은 무역을 촉진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, 표준화, 적합성 평가, 인정 및 계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.

제6.9조

투명성

1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자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,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를 포함한 정보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.
2. 제안된 기술규정이 WTO에 통보된 경우,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

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4. 당사국은 안전, 보건,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의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의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.

5.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, 양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 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.

제6.10조

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직접 대면, 원격 회의,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.

2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촉진 및 점검

나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강화

다.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, 채택,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

- 라. 규제 당국, 인정 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추가 협력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분야별 제안에 대한 검토
 - 마.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, 협정 교섭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여, 한 쪽 당사국이 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
 - 바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,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, 그리고
 - 사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력 강화
3. 이 장의 목적상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.
- 가. 한국의 경우,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 - 나. 아랍에미리트의 경우, 산업 및 선진기술부 표준규제부문 또는 그 승계기관
4.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
5. 연락처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제6.11조

정보 교환 및 기술 논의

1.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.

2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제6.10조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.

3.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발생한 사안에 대한 기술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6.10조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에 통보하여 기술 논의를 개시하도록 노력한다.